

조기결정(경정결정)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즉시	
납세자	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	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(영업소)		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	전자우편주소		
통지기관			통지받은 연월일		

조기 결정·경정결정 신청내용							
세목	과세대상	귀속연도	과세표준	지방세			신청세액
				계	산출세액	가산세	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·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임장

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"위임받은 자"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·경정결정 신청을 위임합니다.

위임자(납세자)		(서명 또는 인)	
위임받은 자(신청인)		(서명 또는 인)	
위임 받은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위임자와의 관계
	주소	전화번호	
첨부서류	없음		수수료 없음

조기결정·경정결정 신청서 접수증

(접수번호 호)

성명(법인명)	주소(영업소)
접수자	접수일자